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위덕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본교 모든 교직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기타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교 위원회에 알린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시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팀장(산학진흥팀장)이 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운영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등) ①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조사의 실시 및 방법 등)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위 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5분의 1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판정) 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확정,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총장은 관련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해당 교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